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검 토 보 고

### I. 주요내용

-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재임용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합산 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 제1항제7의2호 및 안 제26조제6항).
- 징계 및 조사·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더라도 전역되지 않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안 제18조 제4항, 안 제19조제4항, 안 제20조제3항, 안 제21조제3항, 안 제24조의2 제2항).
-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 보직해임심의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의 장교로 해당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안 제58조의2, 안 제60조의2)

- 전직지원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창업까지 확대하고, 전직지원 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며,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4대보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의무복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도록 하며,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

## II. 검토 의견

### 가. 전직지원교육 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필요(안 제46조2)

- 안 제46조의2는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국방전직교육원 또는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전직지원교육의 성과 평가 및 개선을 위하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전직지원교육 종사자에게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정보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런데 개정안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위탁업무 종사자가 취급하게 되는 4대 보험 자료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sup>1)</sup> 또는 고유식별정보<sup>2)</sup>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해당 정보를 누설한 경우 벌칙 등의 제재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개정안은 위탁업무 종사자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실효성 있는 제재장치를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한편 전직지원교육 업무는 본래 국가가 수행해야 할 공적 기능

---

1)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으로서, 민간 위탁기관 종사자가 전직지원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역예정군인의 취업·창업 지원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 수수 등 부패행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전직지원교육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 수뢰죄 등의 경우 공무원으로 보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sup>3)</sup>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도입하는 안을 국방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3)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수 정 의 견>

| 개 정 안                                                                                                                               | 수 정 의 견                                                                                                                                                                                                                                 |
|-------------------------------------------------------------------------------------------------------------------------------------|-----------------------------------------------------------------------------------------------------------------------------------------------------------------------------------------------------------------------------------------|
| <p>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p> | <p>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u></p> <p>-----</p> <p>-----</p> <p>-----</p> <p>-----</p> <p>1. <u>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u></p> <p>2. <u>국방부장관이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u></p> |

## 나. 항고심사위원회의 예외적 구성 사유 수정 필요(안 제60조2)

- 안 제60조의2제4항은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의 장교와 군법무관 1명으로 항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개정안은 예외적 구성 사유를 ‘선임인 장교의 수가 5명에 미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안 제60조의2제2항·제3항4)에 따라 선임 장교 수가 5명에 미달하더라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예외적 구성 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예컨대 항고인보다 선임이 아닌 군법무관 1명을 포함한다면 선임 장교 4명인 경우에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선임 장교 수 5명 미달’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 장교와 군법무관 1명으로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예외적 심사위원회 구성 사유를 ‘5명에 미달하여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4) 안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② 항고심사위원회는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素養)이 있는 장교로 하여야 한다.  
③ 항고심사위원이 군법무관인 경우에는 항고인보다 선임이 아닌 경우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이에 국방부와 협의하여, 안 제60조의2제4항에 규정된 심사위원회의 예외적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 <수 정 의 견>

| 개 정 안                                                                                                                              | 수 정 의 견                                                                                                             |
|------------------------------------------------------------------------------------------------------------------------------------|---------------------------------------------------------------------------------------------------------------------|
|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br>① ~ ③ (생략)<br>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5명에 <u>미달하는</u>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의 장교와 군법무관 1명으로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br>① ~ ③ (개정안과 같음)<br>④ -----<br>-----<br>--- <u>미달하여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u> -----<br>-----<br>----- |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박 병 섭)